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국장 장종연)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안 제3조 ~ 제6조)
- 공공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안 제7조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양성평
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함을 규정함
-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운영 (안 제14조,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정옥)

- 본 건은 농어촌의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급식의 질 향상과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
안으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은
 - 제2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부터 제6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공
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3장은 공공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부터 제13조에서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 제4장은 공공급식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 공공급식센터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도농상
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었음.
- 본 조례안은 도농간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건

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으로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 및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나. 수정내용

- 안 제8조 제3항 제2호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를 삭제하고, 제3호를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여 제2호로 하며,
- 안 제8조 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한다.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115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19. 6. 19.

제안자: 이규선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으로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 및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2. 수정내용

- 안 제8조 제3항 제2호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를 삭제하고, 제3호를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여 제2호로 하며,
- 안 제8조 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3항 제2호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를 삭제하고, 제3호를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여 제2호로 하며, 안 제8조 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회 의원 2.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 3.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 ----- ----- ----- ----- 1. 구의회 의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 관련 전문가 3.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공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란 도시와 농어촌(이하 "도·농" 이라 한다) 간 상호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한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 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어촌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장 공공급식 지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방안
4.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5.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농수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기관의 급식인원수 및 급식일수
 3.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우수식재료 사용 시 소용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공공급식을 위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까지 공공급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급식위원회

제7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

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구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4. 식재료의 수발주시스템, 물류 및 배송, 검수·검품·미품·클레임 등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 및 생산지 기초자치단체 공공급식 담당부서의 장, 구 및 생산지 공공급식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회 의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 관련 전문가
3.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

제14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수산물 생산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 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제15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공

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제5장 보칙

제1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보조금의 지급,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5 호
----------	---------

제출연월일: 2019.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안 제3조 ~ 제6조)

다. 공공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안 제7조 ~ 제10조)

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함을 규정함

마.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운영 (안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9. 5. 2. ~ 5. 2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공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란 도시와 농어촌(이하 "도·농" 이라 한다) 간 상호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한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 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어촌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장 공공급식 지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방안
4.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5.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농수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기관의 급식인원수 및 급식일수
 3.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우수식재료 사용 시 소용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공공급식을 위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까지 공공급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급식위원회

제7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

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구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4. 식재료의 수발주시스템, 물류 및 배송, 검수·검품·미품·클레임 등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 및 생산지 기초자치단체 공공급식 담당부서의 장, 구 및 생산지 공공급식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회 의원
2.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
3.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

제14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수산물 생산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 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제15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제5장 보칙

제1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보조금의 지급,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